

3X3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정 2018. 1. 23.

개정 2022. 6. 27.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3X3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3X3 농구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선수 및 그 단체를 관리, 지원 및 육성함으로써 3X3 농구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는 업무의 일환으로 3X3 농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3X3 각급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3X3 각종 국제경기대회 참가 경기임원 선임, 각급 국가대표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3. 3X3 각급 국가대표 훈련계획, 훈련지도, 훈련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3X3 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3X3 각급 국가대표 파견 임원 및 선수전형 추천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3X3 농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7. 3X3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8. 3X3 대회의 주최 및 주관, 각종 대회 개최 승인에 관한 사항
 9. 3X3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10. 3X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3X3 지도자,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12. 그 밖의 3X3 진흥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관련된 사항 등
- ② 본회는 시·도농구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농구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 본회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 등록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단체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임원 1명,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급)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관련규정 및 본회 정관,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18. 1. 23.)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22. 6. 27.)를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